

*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력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보 건	9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라.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과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